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신설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36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신설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2. 6.
3. 회 부 일 : 2026.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완료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 부문의 출연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하여 기금 운영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신설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의 조성을 출연뿐만 아니라 기부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 기부금품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②(생략)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u>물품</u> ,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u><신설></u>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u>기부금 또는 물품</u> ,----- 제18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

현행	개정안
	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및 농어촌·농어업인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협력재단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¹⁾ 민간기업 등이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

1)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 우대사항]

구분	세부내용	비고
세제 혜택	○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u>지정기부금 손금산입</u>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 공제(출연금의 10%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세제 혜택을	지정기부금 손금산입과 법인세 10% 공제 혜택을 중복하여 제공
정책적 인센티브	○ 공공기관 평가 시 점수 부여 ○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점수 부여 ○ 정부, 공공기관 등 각종 포상 · 평가 제도와 연계로 출연기업의 지속적인 농어촌 사회공헌 유도	-
출연 기업·단체 홍보	○ 출연기업로고 표시, 언론홍보 ○ 우수출연기업 대상 정부포상 추천 ○ 지자체 감사패 추천 및 전달 ○ 농어촌 ESG 인정패 증정	-

*자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기금소개 각색

한편,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²⁾은 국가 등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협력재단은 정부로부터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거나 정관 변경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의 접수가 금지되는 기관에 해당함.

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그런데, 현행법 제14조³⁾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재원에 “출연금”과 “기부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8조의2는 상생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출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 접수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법 체계상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 결과, 민간기업 등은 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이 기부⁴⁾로서 합법적인지 불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원활한 기금 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협력재단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 접수의 예외가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을 조성한다는 기금 목표⁵⁾에 비하여, 조성액이 크게 미달(2025년말 기준 연평균 조성액 347억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연도별 상생기금 조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000	2	300,900	68	38,600	30,964,500
		(98.9%)		(1.0%)		(0.1%)	(100.0%)
2018	30	17,930,304	9	5,215,000	27	13,500	23,158,804
		(77.4%)		(22.5%)		(0.1%)	(100.0%)
2019	43	17,543,314	26	5,045,190	9	5,000	22,593,504
		(77.6%)		(22.3%)		(0.1%)	(100.0%)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금의 조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기부금품법」상 “기부”는 공익목적 등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행위임.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0	65	20,434,868	76	17,053,057	16	107,411	37,595,336
		(54.4%)		(45.3%)		(0.3%)	(100.0%)
2021	94	25,738,846	70	19,683,671	5	102,607	45,525,124
		(56.5%)		(43.2%)		(0.3%)	(100.0%)
2022	101	15,945,206	111	19,245,226	7	226,200	35,416,632
		(45.0%)		(54.4%)		(0.6%)	(100.0%)
2023	117	13,387,204	103	16,941,254	5	166,717	30,495,175
		(43.9%)		(55.6%)		(0.5%)	(100.0%)
2024	116	13,626,644	88	20,944,719	9	81,500	34,652,863
		(39.3%)		(60.5%)		(0.2%)	(100.0%)
2025.12	122	13,024,560	93	36,027,438	5	4,600	49,056,598
		(26.6%)		(73.4%)		(0.0%)	(100.0%)
다년협약 잔여분	1	35,000	1	3,000,000	-	-	3,035,000
		(1.2%)		(98.8%)		(0.0%)	(100.0%)
총 계 (중복제외)	703 (140)	168,290,946	579 (238)	143,456,454	151 (137)	746,135	312,493,536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초 동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여야정 합의문6)에서 기금의 재원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하고 있는 점, 현재도 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새로운 입법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협력재단은 상생기금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관리·운용하고

6) 한·중 FTA 비준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 관련 내용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 억원 씩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 재단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한다.
 - 동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있고, 그 밖에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재단으로 하여금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한 분야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적 성격을 가진 협력재단의 기부금품 접수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부가 준조세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생기금에 대해서만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별법에서 기부금품 접수의 예외를 규정한 입법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음.

유사 입법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운영) ⑤ <u>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에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u>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지침 마련 및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⁷⁾

문 의 처
02)6788-5417

7)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